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이라는 초(超)소송법적 이익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실체적 진실주의는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우선적으로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확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X) ㉡(O) ㉢(X) ② ㉠(X) ㉡(O) ㉢(O)
- ③ ㉠(O) ㉡(O) ㉢(X) ④ ㉠(X) ㉡(X) ㉢(O)

3. 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된다.
-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4.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더라도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소송지연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피의자·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닥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당사자 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6. 소송행위·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 ②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 소송요건의 존부 등에 관하여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었다면 법원이 반드시 심판할 것은 아니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 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7.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상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③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근거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영장에 기재된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9.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동범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를 검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10. 고소 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준용된다.
 - ③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친고죄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1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 P가 손님을 가장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단지 P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찾아가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甲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甲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甲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甲을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다.
12.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 따라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 ②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와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14.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甲을 체포한 지점이 거리상 약 1km 떨어져 있고 시간상 10분 정도 차이가 있으며 경찰관들이 甲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추적하여 따라간 것은 아니고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운전석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그 교통사고의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甲을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甲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1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 완료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구속영장에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의자에 대하여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그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 ③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한 사정만으로도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1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17.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 ②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1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19.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되,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 집행을 위하여 야간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중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20.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의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불송치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중지·피의자 중지 등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공판 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22.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③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상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다.
- ④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23.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
- ③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축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④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③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④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2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경우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그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사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고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28.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때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③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남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했다면 검사의 입증취지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3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庭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庭해 버린 때에도 수소법원으로서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32.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연속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33.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도 허용된다.
-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명서 사본이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4.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5.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36.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지만,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
- ②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의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에 대한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7. 소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②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 ③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8. 약식명령에 관한 甲의 설명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乙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각각 몇 개인가?

<甲의 설명>

- ㉠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합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乙의 설명>

- ㉣ 즉결심판절차의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있다.
- ㉤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주형, 부수처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3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① 甲 : 1개 - 乙 : 2개 ② 甲 : 1개 - 乙 : 3개
- ③ 甲 : 2개 - 乙 : 2개 ④ 甲 : 2개 - 乙 : 3개

39. 항고·재항고·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룰 수 없다.
- ②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③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④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0.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소정의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